
Policy and Law Report _Vol.185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3.5.8.~5.1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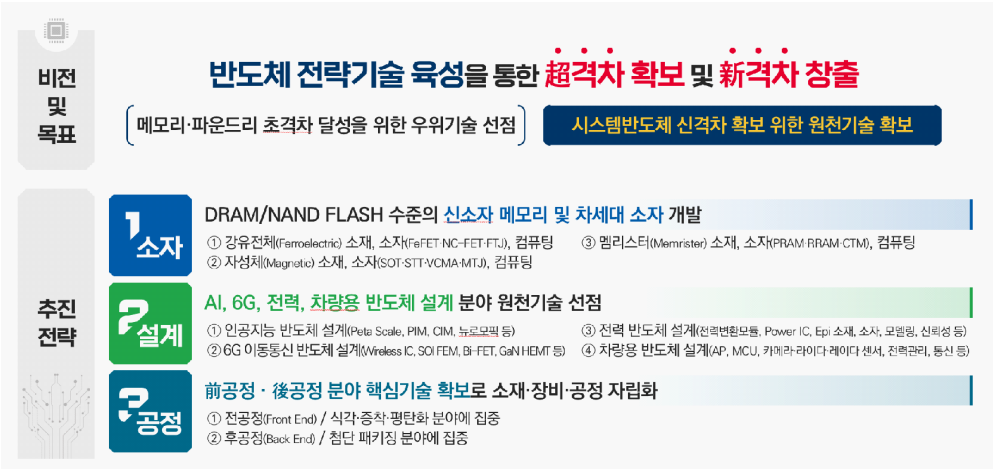
May 15, 2023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Letter 목차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 ① 공포 법안
 -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 ③ 법률 발의안
3.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5. 지난 주(5/8~5/14)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요 뉴스레터 List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	내용	일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반도체 미래기술 로드맵」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반도체 미래기술 로드맵」을 발표한 후, 「반도체 미래기술 민관 협의체」를 출범하고, 반도체 주요기업의 기술동향과 그간의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R&D) 성과를 공유함 세계적으로 반도체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미국, 대만,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은 첨단 산업 발전과 국가 안보를 위해 자국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국가적 차원에서 역량을 결집하고 있음 우리 정부도 이에 대응하여 최근 반도체·디스플레이·차세대전지 등 3대 주력기술 초격차 연구개발(R&D) 전략을 발표('23.4월)하였고, 한-미 정상회담('23.4월) 및 한-일 정상회담('23.5월)에서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기술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 이러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오늘 산·학·연·관 반도체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미래핵심기술 확보 전략인 「반도체 미래기술 로드맵」 세부사항을 발표하고, 「반도체 미래기술 민관 협의체」를 발족하여, 이를 기반으로 민관 역량을 총결집하여 전략적으로 반도체 연구개발을 지원할 예정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신소자 메모리 및 차세대 소자 개발 (10개) ② 인공지능(AI), 6세대(6G), 전력, 차량용 반도체 설계 원천기술 개발 (24개) ③ 초미세화 및 첨단 패키징을 위한 공정 원천기술 개발 (11개) < 반도체미래기술로드맵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  비전 및 목표: 반도체 전략기술 육성을 통한 초격차 확보 및 신격차 창출 메모리·파운드리 초격차 달성을 위한 우위기술 선정: 시스템반도체 신격차 확보 위한 원천기술 확보 추진 전략: 1. 소자: DRAM/NAND FLASH 수준의 신소자 메모리 및 차세대 소자 개발 ① 강유전체(Ferroelectric) 소자, 소자(FeFET NC-FET-FTJ), 컴퓨팅 ② 자성체(Magnetic) 소자, 소자(SOT-STT-VCM-MTJ), 컴퓨팅 ③ 멤리스터(Memristor) 소자, 소자(PRAM, RRAM, CTM), 컴퓨팅 2. 설계: AI, 6G, 전력, 차량용 반도체 설계 분야 원천기술 선정 ①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Peta Scale, PIM, CIM, 뉴로모픽 등) ② 전력 반도체 설계(전력변환모듈, Power IC, Epi 소자, 모뎀, 신력성 등) ③ 6G 이동통신 반도체 설계(Wireless IC, SOI FEM, Bi-FET, GaN HEMT 등) ④ 차량용 반도체 설계(AP, MCU, 카메라-라이다-레이다 센서, 전력관리, 통신 등) 3. 공정: 前공정·後공정 분야 핵심기술 확보로 소재·장비·공정 자립화 ① 전공정(Front End) / 식각·증착·평탄화 분야에 집중 ② 후공정(Back End) / 첨단 패키징 분야에 집중	2023-05-09

부처	내용	일시
산업통상 자원부	•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 발표 산업통상자원부는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선제적 안전기준 개발 ▲규제 혁신 ▲안전관리 역량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소안전관리 로드맵 2.0’을 발표함 최근 정부는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 방안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전략 등 새로운 수소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하였으며 (’22.11월), 기업도 청정수소 생산설비(수전해, 암모니아 분해 등), 액화수소 도입, 수소모빌리티 분야 수소 신제품 및 설비 개발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음 이에 따라, 새로운 수소경제 정책이 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청정수소 생산, 수소발전, 액화수소 등 수소 신제품 및 설비에 대한 안전기준 개발 및 안전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22년 6월부터 산학연 전문가 74명으로 구성된 ‘수소안전정책위원회’를 운영하며 총 17회에 걸친 회의 통해 ▲청정수소 생태계를 위한 선제적 안전기준 개발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 ▲안전과 산업의 균형을 위한 안전관리 등 3대 전략, 10대 추진과제, 64개 세부과제를 발굴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선제적 안전기준을 개발 - (수소모빌리티) 수소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 지게차·트램·열차·선박 등 다양한 수소모빌리티의 수소충전소 충전을 허용하고, 수소모빌리티에 장착되는 연료전지의 안전기준 개발 - (수소발전) 석탄-암모니아 혼소발전, 액화천연가스(LNG)-수소 혼소발전을 위해 발전용 대용량 암모니아 또는 수소 배관 안전기준 등 인수·저장·유통 인프라 관련 안전기준 개발 - (청정수소 생산) 수전해 및 암모니아 분해 등 다양한 청정수소 생산설비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 (액화수소) 현재 임시 안전기준인 액화수소 안전기준을 제도화하여 안전요건을 준수하면 누구나 액화수소를 생산, 사용할 수 있게 함 ②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혁신 추진 - (안전관리 제도) 개발단계 수소 제품은 별도의 신속 검사체계를 적용하고, 자율안전관리 우수사업자는 일정기간 정기검사를 면제하는 등 안전관리 제도 개선 - (수소충전소) 수소버스, 상용차, 지게차, 실내물류운반기계 등 다양한 수소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 셀프충전, 도심형 충전소, 실내충전 안전기준 합리화 등 수소충전소에 대한 규제 개선 ③ 안전과 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 - (안전성 강화) 대규모 수소시설, 수소운송차량 등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도입, 긴급누출 차단장치 의무화 등 안전관리 강화 - (안전관리 역량강화) 수전해, 액화수소 등 수소 검사·시험 인프라를 차질없이 구축하고 수소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수소안전분야 국제협력 추진 등을 통해 수소안전전담기관 및 사업자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	2023-05-09

부처	내용	일시
금융 위원회	• 「기업 M&A 지원방안」 발표 금융위원회는 지난 3.10(금) 전문가 간담회, 3.27(월) 정책세미나, 4.6(목) 금융발전심의회 자본분과 회의에서 있었던 논의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기업 M&A 지원방안」을 발표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우리경제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기업 M&A 규제를 지속해서 개선 - (공개매수시 사전 자금확보 부담을 완화) 신뢰성 있는 인수금융기관 등의 대출확약 및 LP의 출자이행 약정을 공개매수의 자금확보 증빙서류로 인정하여 공개매수자의 자금 조달 비용을 경감 - (분할 또는 분할합병시 CB·BW 등 전환처리 절차를 간소화) CB·BW의 경우에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전자등록기관(예탁결제원)이 증권사 등으로부터 투자자 정보를 직접 받아 해당 증권의 전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M&A 리파이낸싱 대출 여력 확대) 종투사의 M&A 리파이낸싱 대출도 ‘추가신용공여’ 적용대상으로 인정 - 정부부처간 협업을 통해 하반기중 추가 규제개선 방안 발표 ② M&A를 통한 기업구조조정 지원 강화 - (의무공개매수제도의 합리적인 조정 추진) 기업이 의무공개매수 대상이자 기업결합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의무공개매수 시점을 유예할 수 있는 방안 검토. 또한 기업 구조조정 등 정책목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의무공개매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하여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 - (기업구조혁신펀드 추가 조성) '23년에 1조원 추가 조성하고, 캠퍼가 모펀드를 운용하도록 하여 시장에 M&A 관련 유동성을 제공하고, 캠퍼의 자체적인 기업지원 프로그램과 펀드 투자를 연계하여 피투자기업의 정상화를 뒷받침 ③ 산업재편 수요에 대응한 전략적 M&A 지원 - (국가 전략산업 분야의 해외우수기업 M&A 지원) 국내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공급망 리스크 완화, 해외시장 교두보 확보 등을 위해 투·융자 프로그램 및 자문·컨설팅(시장조사, 해외네트워크 연결, 인수전략 설계 등)을 제공하여 해외 기술기업 인수 및 해외진출을 적극 뒷받침 - (유망 벤처·중소기업의 대형화 및 사업확대를 위한 M&A 지원) 시장형성이 부진한 소규모 M&A 활성화를 위한 ‘벤처·중소기업 인수금융 특별대출 프로그램’(0.3조원, 기은) 신설, ‘중소기업 M&A 전용펀드’(’23년중 0.1조원, 기은) 신설 등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 예정 - (기업의 원활한 사업재편 및 재도약 지원) 경쟁력 약화 우려 기업의 기존사업 매각 및 신사업 인수를 위한 전용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취약기업의 재도약을 위해 PEF 등과 공동으로 해당 기업을 인수한 후 재기지원하는 프로그램 등 운영 계획 ④ 투자자 보호를 위한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 - (합병 공시 강화) 합병 진행과정 및 이사회 검토내용이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주요 사항보고서 및 증권신고서 공시항목을 구체화	2023-05-08

부처	내용	일시
	- (외부평가기관 규율을 전제로 합병가액 산정방식의 유연성 제고) 법률상 경직적인 합병가액 산정방식으로 인해 진정한 기업가치를 반영하기 어렵고 당사자간 자유로운 교섭을 제한하여 M&A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감안하여 비계열사간 합병의 경우 제3자 외부평가 의무화를 전제로 합병가액 산정방법을 자율화. 다만 규제회피 목적으로 비계열사간 합병으로 위장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1년 이상 비계열사 관계에 있는 합병의 경우에만 적용 예정 - (기타) 간이합병을 우회상장 심사대상에 포함시키고, 우회상장여부 판단시 기업가치 평가액을 고려하는 등 우회상장과 관련하여 일반투자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추진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령 *해당 법령안을 클릭하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기획재정부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3.7.1. 시행 예정) 조달청장이 수요물자를 필요로 하는 국가기관 등을 위해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또는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여러 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경우 그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하는 계약보증금을 종전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금액에 납품이행실적을 고려한 비율을 추가로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기관 등에 물자를 공급하는 업체의 계약보증금 납부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제13조의2) *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조달청장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의 제조·구매 및 가공 등을 위해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미리 단가만을 정하여 체결하는 계약 **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장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하기 위해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2023-05-09
외교부	• 「재외동포기본법 제정령」 (2023.11.10. 시행 예정. 다만, 제11조는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 예정)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을 규정함으로써 정부가 체계적·종합적으로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이 법은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외동포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제1조) ② 재외동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제7조 및 제8조) ③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두되, 위원장은 외교부장관이 되며,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재외동포청장이 되도록 함 (제10조) ④ 국가는 재외동포의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 및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설립하도록 함 (제11조) ⑤ 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재외동포사회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제14조)	2023-05-09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⑥ 재외동포재단 직원의 고용 보장을 위하여 종전의 「재외동포재단법」에 따른 재외동포재단의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정원 내에서 고용을 승계하되, 재외동포재단 해산으로 직원 수가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별도 정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부칙 제4조)	
국토 교통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3.5.9. 시행) 건설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종전에는 건설사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자본금 및 기술능력에 관한 등록기준 특례를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2개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1개 업종의 등록증을 반납한 후 다시 새로운 업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도 등록기준 특례를 적용하고, 종전에는 건설업의 기술능력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상시 근무하는 것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이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불법 하도급과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키거나 일반 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13조제1항제2호, 제16조제1항, 제87조의3제1호 신설 등)	2023-05-09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23.5.10. 시행)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부득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그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으로써 주택의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53조, 제57조제7항제7호 등)	2023-05-10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중소벤처 기업부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3.5.16. 시행 예정)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계획을 우선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060호, 2022. 11. 15. 공포, 2023. 5. 16. 시행)됨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승인가준을 갖춘 사업전환계획 중에서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해당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설비투자 계획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업전환계획을 우선 승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8조제2항)	2023-05-09

②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기획재정부	•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균형발전 및 철도이용객 편의를 증진하고자 주식회사 에스알의 운행노선 확대와 신조 고속철도 차량을 추가 도입할 계획으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주식회사 에스알에 대한 자본금을 조속히 확충할 필요가 있어 이를 위해 정부출자기업체의 범위에 주식회사 에스알을 포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정부출자기업체의 범위에 주식회사 에스알 포함 (안 별표1 제31호 신설) ※ 의견 제시기간 : 2023/5/9(화)~5/19(금)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로 제출	2023-05-09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을 국가전략기술의 대상 분야로 추가하고,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및 개인투자용국채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새로 추가된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의 구체적인 기술 범위와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및 개인투자용 국채의 과세특례 요건 등을 정하는 한편, 관광·지역 골목상권·소상공인 등 코로나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경제 전반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내수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기업의 문화 접대비 인정 항목 범위를 확대하며, 군위군이 대구광역시에 통합됨에 따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공장·물류시설 이전 과세특례의 적용을 현행처럼 유지하기 위해 과세특례 대상 지역을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 국가전략기술 확대 (안 별표 7 및 별표 7의2) -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 관련 기술을 추가하는 등 관련 분야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확대함	2023-05-10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②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과세특례 적용 대상 (안 제93조)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유형을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특정금전신탁으로 정하고, 공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신용등급 BBB+ 이하 사채권을 100분의 45 이상, 공모집합투자기구 외의 투자신탁 등의 경우 이에 더하여 신용등급 A(A-, A, A+를 포함)인 사채권을 100분의 15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등 과세 특례의 세부 요건을 정함 ③ 개인투자용 국채 과세특례 적용요건 (안 제93조의9 신설) -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하여 해당 국채의 만기일까지 보유하는 경우 분리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개인투자용 국채 전용계좌의 운용방법을 정하는 등 과세 특례의 세부 요건을 정함 ④ 문화 접대비 범위 확대 (안 제130조제5항제14호부터 제16호까지 신설) - 내국인이 추가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 범위에 유원시설 이용권 구입 등을 추가함 ⑤ 공장·물류시설 이전 과세특례 적용 이전지역 조정 (안 제56조제2항, 제79조의8제1항 및 제79조의10제2항) - 공장·물류시설의 이전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지역에서 군위군을 제외함 ※ 의견 제시기간 : 2023/5/10(수)~5/19(금)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로 제출	
행정 안전부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정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지자체장이 직권변경하도록 하여 조세형평성을 도모하고, 사실상 취득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낮더라도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함에 따라 신뢰성 등이 인정되는 일부 유형에 대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주민세 사업소분 연면적 세율에 종과되는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선명령 등을 받은 사업소를 추가하여 종과 규정을 명확히 하고,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코자 주택 재산세 산정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하 및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자체장이 시가표준액을 직권변경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안 제4조의2제3항)	2023-05-08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② 차량 등의 유상승계 취득시 사실상 취득가격 인정 범위 확대 (안 제18조의3제1항) ③ 주민세 사업소분 중과 대상인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의 범위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선명령 등을 받은 사업소를 추가 (안 제83조, 제5호, 제6호) ④ 1세대1주택자의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안 제109조제1항제2호) -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 100분의 43 - 시가표준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6억원 이하인 주택 : 100분의 44 -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100분의 45 ⑤ 고령자·장기보유자 납부유예 제도 세부사항 규정 (안 제116조의2) -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신청 및 허가여부 통지 ※ 의견 제시기간 : 2023/5/8(월)~6/7(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과)로 제출	
	•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도입된 고령자·장기보유자의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제도 관련 납부유예 허가 취소 시 납세고지서를 별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납부유예 취소시 납세고지서 규정 (안 제58조제3호다목) ② 주택 재산세액 납부유예 관련 서식 규정 (안 제61조의4) ③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취소시 납세고지서 신설 (안 별지 제59호의4) ④ 납부유예 신청서, 허가 통지서 등 서식 신설 (안 별지 제63호의2 등) ※ 의견 제시기간 : 2023/5/8(월)~6/7(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과)로 제출	2023-05-08
산업통상 자원부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외국인투자 신고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2023-05-09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①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사용한 외국인투자 신고시, 투자 신고에 필수적인 사항으로만 구성된 간소화된 “투자개요서” 양식을 마련하여 서류 작성 부담을 완화 (제2조, 별표1 및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2호의3서식) ② 현물출자완료 확인서식상 관세청장의 수입신고필증 확인을 위해 주민(외국인)등록번호를 작성하는 대신 수입신고번호를 작성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개선 (별지 제25호서식) ③ 기타 신고서식상 용어 및 서식 작성방법 정비 - (기관명칭 수정) 법정기관명칭이 아닌 “Invest Korea”를 법정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 수정 (별지 제2호의2서식) - (서식 작성방법 구체화) 외국인간의 기존 주식 양·수도가 있을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변동이 없으므로 이와 관련된 신고서 작성방법을 구체화 (별지 제1호서식) - (인용조문 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변경된 사항 반영 (별지 제11호의4서식) ※ 의견 제시기간 : 2023/5/9(화)~6/19(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산업통상자원부(투자정책과)로 제출	
환경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징수유예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정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하며 인용 조문을 수정하여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재활용부과금 납부기한 전 징수 시, 변경된 납부기한과 그 이유를 징수 대상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 (안 제28조제5항) ②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유예 또는 분할납부 시, 기한 및 방법과 징수유예 취소사유, 변경 사항 대상자 고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법 개정내용과 인용조문을 명확히 함 (안 제28조의2제1항, 제28조의3제2항, 제28조의4, 제35조의2제1항 및 제3항, 제48조제3항, 제48조의2제4호 및 제5호) ※ 의견 제시기간 : 2023/5/12(금)~6/2(금)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환경부(자원재활용과)로 제출	2023-05-12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징수유예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정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하며 인용 조문을 수정하여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재활용부과금 징수 유예 신청방법 및 서식 신설 (안 제18조의2, 별지 제6호의6서식, 별지 제6호의7서식, 별지 제6호의8서식) ② 재활용부과금의 징수 유예 또는 분할납부 시, 기한 및 방법과 징수유예 취소사유, 변경 사항 대상자 고지 의무를 명확히 하고 법 개정내용과 인용조문을 명확히 함 (안 제28조의2제1항, 제28조의3제2항, 제28조의4, 제35조의2제1항 및 제3항, 제48조제3항, 제48조의2제4호 및 제5호) ※ 의견 제시기간 : 2023/5/12(금)~6/21(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환경부(자원재활용과)로 제출	2023-05-12

③ **법률 발의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정무 위원회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 공정거래에 관한 일반법의 지위에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역외적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역외적용에 관한 조항이 없어 대규모유통업과 관련하여 해외 사업자가 국내 사업자에게 부당한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역외적용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과 관련된 해외 사업자의 부당한 요구 등을 방지하고 국내 시장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4조의 2 신설)	2023-05-08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1인)」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한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업무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고 그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기관 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최근 가상자산사업자가 운영하는 거래소에 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이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거래소 이용자들이 거래소의 운영과정상 문제점을 파악하여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투명한 가상자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의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의 주요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가상자산거래 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 제15조제10항 신설 등)	2023-05-09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의원 등 10인)」 은행권이 시장금리의 변동상황에서 불합리한 금리산정으로 과도한 예대금리차를 통해 이윤을 수취하고, 은행 간 경쟁을 제한하는 행태를 보인다는 지적이 반복적으로 제기됨 이에 금융당국은 관련 규정을 통해 은행별 예대금리차와 금리정보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공시제도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분리하여 공시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2023-05-10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또한, 은행권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명확한 원인을 확인하고 비교하기 위해서는 가산금리 중에서도 업무 원가나 위험 관리비용이 아닌, 오로지 은행이 목표한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한 수익률을 공개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이를 통해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하고, 부당한 금리산정을 제한하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안 제30조제3항 · 제4항 신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의원 등 10인)」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는 갈수록 다양화 · 복잡화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 위주로 제재하고 있어 최종 처벌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전력자의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효과적인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다수 투자자에 피해를 입히고 자본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제재수단을 보다 다양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일정 기간 자본시장에서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회사 임원으로서의 활동을 제한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추가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제한명령 (안 제426조의2제1항 신설) - 증권선물위원회는 조사결과 투자자를 보호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제한명령을 내릴 수 있음을 정함 - 증권선물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하여 금융투자상품 계좌의 개설, 매매 등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증권선물위원회로 하여금 불공정거래행위자가 주권상장법인 등에서 임원으로 선임되거나 재임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② 제한 명령의 기간 (안 제426조의2제2항 신설) - 증권선물위원회가 거래제한 혹은 임원선임에 대한 제한명령을 내리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및 횟수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제한 기간에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	2023-05-11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③ 거래제한대상자에 대한 거래 제한 절차 (안 제426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 금융투자업관계기관, 거래소에 거래제한대상자에 관한 정보를 통보할 수 있음을 규정함 - 금융투자업자는 거래제한대상자가 거래를 요청하는 경우 거래를 거부하여야 하며, 거래요청 사실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 및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함을 규정함 - 거래소는 금융투자업자가 거래요청 거부 및 거래요청 사실 통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알게 된 경우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을 규정함 ④ 임원선임제한대상자의 임원 선임·재임 제한 (안 제426조의2제6항 신설) - 주권상장법인등은 임원선임제한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으며, 소속 임원이 임원선임제한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임원을 해임하여야 함을 규정함 ⑤ 증권선물위원회의 시정조치 등 (안 제426조의2제7항 신설) - 증권선물위원회가 제한명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거래제한대상자 또는 주권상장법인등에 대해 금융투자상품의 처분명령 또는 임원 해임요구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함 ⑥ 제한명령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안 제446조제64호, 제449조제1항제48호의2부터 제48호의4까지 신설) - 제한명령 등 제규정을 위반한 제한대상자 본인, 금융투자업자, 주권상장법인등에 대해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정함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을 하려는 가맹희망자가 여러 가맹본부의 가맹사업과 관련한 공신력 있는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게 정보공개서 등록의무를 부여하고, 등록기관에서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개인정보 및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특히,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필수물품을 공급하면서 얻게 되는 유통마진인 차액가맹금에 관한 정보의 경우 시행령 규정에 따른 의무기재사항이지만 영업비밀로 분류되어 공개되지 않고 있음 차액가맹금에 관한 정보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어느 정도의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여러 가맹본부의 사업을 비교하여 가맹점 사업을 최종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지표임. 따라서, 영업비밀로 분류하기보다 가맹희망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공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는 가맹점당 차액가맹금 지급현황은 영업비밀로 보지 아니함을 명시함으로써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및 공개 제도 본래의 취지를 실현하고 가맹희망자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10호라목 및 안 제6조의2제4항 신설 등)	2023-05-12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금리인하요구권을 두어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함 그런데 2018년 「은행법」을 비롯한 금융 관련 법률에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3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실질적인 제도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안내가 부족하고 금융회사마다 그 안내 수단 및 기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와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매 분기마다 알리도록 규정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안 제50조의13제2항)	2023-05-12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금리인하요구권을 두어 신용협동조합과 대출·어음할인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해당 조합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조합은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함 그런데 2018년 「은행법」을 비롯한 금융 관련 법률에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3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실질적인 제도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는 신용협동조합 등 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안내가 부족하고 금융회사마다 그 안내 수단 및 기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조합이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와 대출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매 분기마다 알리도록 규정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안 제45조의3제2항)	2023-05-12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금리인하요구권을 두어 보험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험회사는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함	2023-05-12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그런데 2018년 「은행법」을 비롯한 금융 관련 법률에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3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실질적인 제도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는 보험회사를 비롯한 금융회사의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안내가 부족하고 금융회사마다 그 안내 수단 및 기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험회사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매 분기마다 알리도록 규정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안 제110조의3제2항)	
	•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금리인하요구권을 두어 상호저축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상호저축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상호저축은행은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18년 「은행법」을 비롯한 금융 관련 법률에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3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실질적인 제도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는 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안내가 부족하고 은행마다 그 안내 수단 및 기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상호저축은행이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와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매 분기마다 알리도록 규정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안 제14조의2제2항)	2023-05-12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금리인하요구권을 두어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은행은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함 그런데 2018년 「은행법」을 비롯한 금융 관련 법률에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3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실질적인 제도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는 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안내가 부족하고 은행마다 그 안내 수단 및 기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은행이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와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매 분기마다 알리도록 규정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안 제30조의2제2항)	2023-05-12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기획재정 위원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31인)」 그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역산업 육성, 공공기관 지방이전, 교통·물류망 확충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여 왔음 그런데 이러한 정책의 효과가 미미한 상황으로 여전히 인구·소득·산업 등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력 및 사회적·문화적 자본 격차는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여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의 제정이 추진 중이며, 같은 법에서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는 지방기업과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주요 내용으로는 ①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른 지방기업이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안 제10조 및 제24조) ② 기회발전집합투자기구가 투자대상기업에의 출자로 취득한 주식·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 특례 신설 (안 제27조의3) ③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창업하려는 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공제금액 한도 상향 (안 제30조의5) ④ 기회발전특구로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간 확대 (안 제63조 및 제63조의2)	2023-05-09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지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에 대하여 그 월세액의 100분의 15(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17)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부동산 가격과 이자율의 변동으로 월세액을 지급하는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으므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무주택 세대주의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세입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월세액 세액공제 제도의 소득기준을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로 완화함으로써 월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안 제95조의2)	2023-05-10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과학 기술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등 12인)」 최근 미·중을 비롯한 주요국 간의 첨단기술 패권전쟁이 심화 되고 있음.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기술은 미래 먹거리 산업이자, 국가의 주권과도 연관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중요함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노골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최근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법 제정을 통해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업에게 까다로운 수령 조건을 걸고 있음. 문제는 보조금을 빌미로 지나치게 많은 기업의 정보를 요구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전략기술과 영업 기밀이 유출될 가능성이 생김 이에 본 개정 법률안을 통해 국내 기업이 해외로부터 국가전략기술 유출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영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림으로써 정부가 나서서 국내 첨단전략기술을 보호하고 핵심 사안의 유출을 방지하고자 함 (안 제27조제2항)	2023-05-08
문화 체육관광 위원회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해서도 본인인증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청소년 등에 대해서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경우에도 회원가입 및 게임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음 특히 당초 게임물에 대한 ‘강제적 섷다운제’의 시행 등을 위하여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해서도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를 위한 규제의 필요성이 있었으나, 지난 2021년, 강제적 섷다운제가 전면 폐지됨에 따라 조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체이용가의 경우 법률단계에서 본인인증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게임산업 진흥과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위한 목적 달성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함임 (안 제12조의3제1항제1호)	2023-05-09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의원 등 18인)」 현행법은 신문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인터넷뉴스서비스로 정의하며, 기사배열 등과 관련하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인터넷뉴스서비스를 통해 뉴스를 접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며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이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러한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인터넷뉴스서비스에도 공적인 책임과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2023-05-12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이에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기사 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책임을 명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기사 제공 등으로 인한 손익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사회적 역할에 상응하는 책임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 제3조 등)	
산업통상 자원중소 벤처기업 위원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의원영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하는 경우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할 수 있는 설비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반면, 민간부분의 경우 권고사항으로 규정하여 공장·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에 대하여는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또는 그 이용설비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시키기 위하여 공공부문 건축물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 건축물도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부문 건축물에 대하여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게 하도록 의무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려는 것임 (안 제12조제3항)	2023-05-11
보건복지 위원회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의원 등 11인)」 2019년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되고 노정간 사회적 합의로 의료기관의 적정인력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과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수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의료기관의 적정인력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보건의료인력 등의 적정인력 기준 마련은, 의료기관의 양질의 서비스제공을 비롯해 환자안전과 보건의료인력 등의 처우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간호사 등 정원을 준수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간호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간호사 1인당 환자의 수가 감소할수록 환자 안전이 향상되고 의료비용이 줄어들며, 국가정책의 간호사 배치 수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에는 구체적인 위임범위 없이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규정을 행정입법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에는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간호사 정원 기준이 불명확하여 의료기관 및 간호사, 환자, 국가조차도 이에 대한 해석이 어려운 실정임	2023-05-10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특히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5명으로 나눈 수,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직접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만을 산정해야 하는지, 이외 외래 및 행정인력 등을 포함한 간호사 모두를 포함해 산정해야 하는지 모호함 최근 국내 의료기관은 10개소 중 3개소가량이 간호사가 부족한 상태이며 최근 5년간 간호사 정원 기준 미준수 의료기관이 7,147개소에 이르고 있으나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약 150건에 불과함 그러나 의료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의료기관의 정원은 의료법에 따라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그 벌칙에 관한 사항도 명시되어야 할 것인데, 불법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처벌과 비교해볼 때 의료인 등의 정원기준 위반이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미치는 직접적인 악영향이 결코 적지 않으므로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력 등의 적정인력과 정원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 시 벌칙 사항을 함께 마련하고자 함 (안 제33조의3, 제36조, 제87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환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환자의 가족이나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의무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교부 등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사망자의 사인을 알 수 없거나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체를 검시하는 경우 사망자의 의무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면 더 정확한 사인 판단이 가능하므로 검시 시에도 사망자의 의무기록 제공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형사소송법」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시체를 해부하는 경우 법원이나 질병관리청장 등이 사망자의 의무기록을 요청하거나 시체를 검안하는 의사나 경찰이 사망자의 의무기록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1조)	2023-05-10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의원 등 10인)」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 중심의 간호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이 밖에도 신종 감염병 대응 및 치료, 돌봄·요양서비스 강화 등을 위해 매년 의료기관과 병상 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인력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2023-05-11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그러나 급증하는 수요에 비해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인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은 충분치 않은 실정임 특히,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충분한 인력 확보를 통한 ‘업무과중화 해소’와 처우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은 부족했으며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조차 부재한 상황임 일례로, 유휴간호사 재취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임의조항(「의료법」 제60조의3)에 근거를 두고 있어 전국적으로 10개 권역 내에서만 운영되고 있음 또한, 현행 「의료법」 제80조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고졸학력으로 제한하는 ‘학력 상한선’을 두고 있어 우수한 간호조무사 인력 수급을 가로막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지망생의 배움 권리 등을 제한하여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음 이에 간호인력 처우 개선 등을 위해 국가가 5년마다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각 시·도에 원활한 간호인력 수급을 지원하기 위한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요건 중 학력 상한선을 폐지하여 간호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과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고자 함 (안 제60조의3, 제60조의4, 제80조)	
환경노동위원회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의원 등 10인)」 자동차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은 운행 시 배기관 배출뿐 아니라 제조 전, 제조, 연료생산, 폐기 등 전과정에서 일어나고 있으나 현재는 운행단계 배출만 관리하고 있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임. 또한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자동차의 환경규제 기준으로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제도의 도입을 검토 중으로 향후 국제적 규범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음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1년에 2030년까지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발표하면서 2026년 이후의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은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에 따른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중간검토하도록 하였고(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환경부고시 제2021-37호), 자동차 전과정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과 관련한 국제 표준 기법 개발을 위한 국제연합(UN) 산하 전문가 작업반에 참여하고 있음 이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근본적으로 감축하여 탄소중립을 가속화하고, 국내 자동차 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방법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고, 자동차 제작업체가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그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023-05-11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주요 내용으로는 ①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의 정의 조항을 신설함 (안 제2조제21호의2 신설) ② 환경부장관이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실시 방법을 마련하여 고시하도록 함 (안 제76조의7제1항 신설) ③ 자동차제작자가 그 제작차에 대하여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그에 대한 행정적·기술적 지원 근거 마련 (안 제76조의7제2항 신설)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의자의원 등 11인)」 각 지자체는 고유사무로서 수도사업을 개별 운영하고 있으나 지자체(수도사업자)별 상이한 여건(인구수, 도시면적 등)으로 인해 요금, 유수율 등 수도서비스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지속적인 가뭄, 신규 수자원개발 어려움 등으로 물 공급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수도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지자체 간 수원 및 시설을 연계하여 수도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고 물 위기 대응력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상수도조합에 주민에게의 안정적 수돗물 공급에 대한 책무 부여 (안 제2조제3항 개정) ② 수도사업 통합 및 상수도조합 정의 신설 (안 제3조제21호, 제25호 신설) ③ 상수도조합이 수도정비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안 제5조제1항, 제6항 개정) - 상수도조합을 설립한 경우 수도정비계획 통합 수립 가능 (안 제5조제1항) - 수도가 둘 이상의 지자체 관할 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등 상수도조합이 수도정비계획 수립 가능 (안 제5조제6항)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수자원공사가 수도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규정에 상수도조합을 추가 (안 제12조제1항 개정) ⑤ 지속가능한 수도경영 기반 구축을 위해 수립하는 종합계획인 수도경영개선종합계획 수립 의무를 도지사에게 부여 (안 제12조의2 신설) ⑥ 두 개 이상의 시군 또는 두 개 이상의 시군, 특광역시가 수도사업을 통합하는 경우의 인가권자를 규정 (안 제17조제6호, 제7호 신설) ⑦ 수도통합을 추진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비용 지원 근거 신설 (안 제75조제2항 신설)	2023-05-12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국토교통위원회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3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레벨3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기준 및 보험제도 등 제도기반을 완비하였고 제조사는 레벨3 자율주행자동차의 판매를 앞두고 있으며, 이어 완전자율주행(Lv.4) 시대 구현을 위해 부합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해 보임 그러나, 완전자율주행자동차(Lv.4)의 국제기준 제정이 지연됨에 따라 당초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조기 상용화 일정에 차질이 예상됨 현행법상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기간이 5년으로 한정되어 있고, 직접 기술을 개발한 제작자에게만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영을 한정하고 있어 상용 서비스 개발에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레벨4 자율주행자동차의 국·내외 안전기준이 마련되기 전 안전성능 확인을 위한 성능인증제를 신설하여 레벨4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유로운 운행과 기업 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생태계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임 (안 제40조부터 제49조까지 신설 등)	2023-05-10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의원 등 11인)」 최근 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하여 사업주체와 시공사 간의 건축비 관련 분쟁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일부 시공사는 과도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입주예정일에 갑자기 입주를 막는 횡포를 부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입주예정일에 맞춰 이사, 전학, 대출, 임대차 계약 등을 계획한 입주예정자들이 막대한 피해와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더구나 청약제도를 통해 일반분양을 받은 사람이나 세입자로 입주할 예정이던 사람들까지 선량한 피해자를 다수 양산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시공사의 폭력적인 유치권 행사를 막고, 국민의 주거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예정일, 입주금, 연체료 및 지체상금에 관한 사항을 제공하도록 함 (안 제54조제4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신설)	2023-05-12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② 사업주체는 시공자와 협의하여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을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사업주체 등이 입주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입주자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안 제55조의2 신설) ③ 입주예정일 통보 후 입주를 방해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안 제104조제9호의2 신설)	
	•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양향자의원 등 10인)」 전기를 동력으로 하여 근거리 이동이 가능한 1인용 이동수단인 개인형 이동장치의 개발·보급이 활성화되면서 이용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법 체계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는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자유업 형태로 운영되면서 여러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거치를 위한 제도·규정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로 인해 개인형 이동장치가 무분별하게 공급되어 보도, 차도 등에 방치되는 등 보행자의 통행에 큰 불편을 주고 안전사고 위험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 또한 부적격자나 음주 이용자의 부주의한 이용으로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가중되고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와 시설에 대한 관리, 이용방법, 거치 그리고 대여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체계를 정비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개인형 이동장치를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전기동력을 사용하며 승차인원이 1인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이동장치로 정의함 (안 제2조)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 등 인프라 구축 및 관리,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공급 관리 계획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및 편의 증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안 제3조 및 제4조)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의 지정 및 노선 지정·고시, 시설기준 마련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2023-05-12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시설에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을 지정하거나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대를 설치할 수 있고, 대중교통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대의 설치·운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⑤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금지 의무를 신설하고, 무단으로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12조) ⑥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여사업의 운영지역, 운영 대수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 (안 제16조) ⑦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 (안 제17조) ⑧ 시·도지사는 도시교통의 흐름과 대중교통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 등록 대수가 이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거치 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8조) ⑨ 대여사업에 이용할 수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요건을 정하고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장치에 번호판 부착 의무를 부과함 (안 제19조) ⑩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대여사업용 개인형 이동장치가 거치제한구역, 거치금지구역 및 도로 등에 무단으로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 의무를 부과함 (안 제20조제4항) ⑪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책임보험가입 의무를 부과함 (안 제21조) ⑫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에 대한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을 제정하고 공시(公示)를 거쳐 대여사업자 등에게 그 시행을 권고하도록 함 (안 제23조)	

3.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기관	주요 일정		비고
상임위	아래 【별첨1】 참조		
국회도서관	5/15(월)	「팩트북」 제101호 발간 - 저출산 대책	
	5/16(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22호 발간 - 독일의 49유로 교통티켓 관련 입법례	
	5/17(수)	금주의 서평 제628호 발간 - 법, 문명의 지도 (퍼난다 피리)	
	5/18(목)	「World&Law」 제2023-10호 발간 - 일상에 퍼지는 마약, 더 늦기 전에 막으려면?	
예산정책처	5/16(화) 14:00	‘가상자산 법인세 과세 이슈’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 - 가상자산 사업자 법인세 과세 이슈	의정관 304호
	5/17(수) 16:30	‘인구변화와 건강보험’ 관련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회 개최 - 국내 유입 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이용 변화와 건강보험 재정 전망	의정관 417호

[별첨1] 제405회국회(임사회) 위원회 의사일정(안)

산자중기위	일시	구분	내용
정무위	5/16(화) 10:00	법안심사1소위	- 법안 심사
	5/17(수) 10:00	전체회의	- 국무위원 후보자(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 인사청 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등
	5/18(목) 15:00	법안심사2소위	- 법안 심사
기재위	5/15(월) 15:00	경제재정소위	- 법안 심사
	5/16(화) 10:00	경제재정소위	- 법안 심사
교육위	5/17(수) 10:00	경제재정소위	- 공청회 (장애인평생교육법안)
	5/17(수) 14:00	경제재정소위	- 공청회 (사립대학(학교)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행안위	5/16(화) 10:00	전체회의	- 법안 의결 및 상정 - 현안질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방청)
문체위	5/17(수) 14:00	전체회의	- 법안 상정
산자중기위	5/16(화) 14:00	중기소위	- 법안 심사
	5/17(수) 09:30	산업특허소위	- 법안 심사
국토위	5/16(화) 10:00	국토법안심사소위	- 법안 심사
여가위	5/16(화) 09:30	법안심사소위	- 법안 심사
정치개혁특위	5/17(수) 14:00	법안심사1소위	- 법안 심사
연금개혁특위	5/17(수) 14:00	전체회의	-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의 건 - 민간자문위원회 연금개혁 검토과제 보고의 건

4.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일자	제목	주최	장소
5/15(월) 13:30	국방과학기술의 소유/관리에 관한 정책 세미나 - 국방과학기술의 활용과 방위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방안	임병헌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5/15(월) 19:00	시장의 실패, 정부실패 그리고 정부규제	윤창현 의원실, 경제지식네트워크 등	의원회관 8간담회실
5/16(화) 10:00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권리 강화를 위한 한국판 DSA 입법 토론회	정필모·윤영찬·이정문· 박완주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5/16(화) 10:00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 입법 촉구 국회 토론회	용혜인·이탄희 의원실, 알바연대 등	의원회관 2간담회실
5/16(화) 14:00	2023 수산혁신포럼	주철현 의원실, 수협중앙회, 수산신문	국회도서관 강당
5/17(수) 10:00	윤석열 정부 교육개혁에 바란다 - 바람직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정경희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5/17(수) 10:00	전국민 압류방지통장 개설 긴급토론회	김태년·김경만· 김경협 의원실 등	의원회관 3세미나실
5/18(목) 14:00	대학의 미래와 고등교육 정책 방향 - 현 정부 대학정책의 검토와 대안	도종환·민형배 의원실, 한국대학학회 등	의원회관 9간담회실
5/19(금) 10:00	'차세대재외동포' 정책과 과제 : 제8회 재외동포정책포럼	최재형 의원실, 세계한인네트워크 등	의원회관 1소회의실
5/19(금) 10:00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정책론회 - 고령화시대 노후 준비, 이대로 좋은가?	류성걸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2] 지난 주 뉴스레터(제184호) 중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 첨부

*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소속기관>

기관	주요 일정		비고
국회도서관	5/10(수)	<u>금주의 서평 제627호 발간</u> - 플랫폼 임팩트 2023 (강재호 외 11인)	
입법조사처	5/8(월)	<u>「NARS 현안분석」 289호 발간</u> - 담배 광고의 외부 노출 규제 현황 및 개선방향으로	
	5/9(화)	<u>한부모가족 빈곤실태와 정책대안 빈곤아동 정책 자문위원회 1차 토론회</u>	
	5/10(수)	<u>「NARS 현안분석」 290호 발간</u> - 양육비 대지급제 해외 운영 사례: 아동빈곤 해소와 양육비 이행 강화의 두 가지 기대효과	
	5/10(수)	<u>「NARS 현안분석」 291호 발간</u> - 학교폭력 가해학생 분리조치 집행 지연의 쟁점과 과제	
	5/11(목)	<u>「이슈와 논점」 2091호 발간</u> - 출연연의 학술지 구독료 사용 현황과 개선과제	
	5/12(금)	<u>「이슈와 논점」 2092호 발간</u> -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의 입증책임 관련 쟁점과 향후 개선 방향	
미래연구원	5/9(화) 09:30	<u>제4회 국가현안 대토론회 개최</u> - 인공지능(AI) 시대의 교육개혁, 무엇부터 해야 하는가?	의원회관 1소회의실

<국회의원실>

일자	제목	주최	장소
5/8(월) 09:30	<u>글로벌 SMR 파운드리(Foundry) 구축을 위한 토론회</u>	최형두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5/9(화) 14:00	<u>MBC 방송문화진흥원 문제점과 대안 모색</u>	홍석준·권성동 의원실, MBC 제3노동조합 등	의원회관 2소회의실
5/10(수) 10:00	<u>첨단통신기술을 활용한 어린이 교통안전망 강화 정책 토론회</u>	박완주·유의동· 이태규·문진석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5/11(목) 10:00	<u>2023 FORUM 한국제약바이오 헬스케어연합회 제2차 포럼</u>	한정애·강기운 의원실, 한국제약바이오헬스케어 연합회	국회도서관 강당
5/11(목) 14:00	<u>2023년 제2회 국회 정책토론회</u> - 과학기술 강국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 연구개발 체계 혁신	조승래·김영식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5/11(목) 14:00	<u>그레이트 한강프로젝트 무엇이 문제인가?</u>	김영주 국회부의장, 서울환경연합	국회도서관 대회의실
5/11(목) 15:00	<u>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회사법 제정 토론회</u>	권칠승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5/12(금) 10:00	<u>건설산업 혁신,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연속토론회 3</u> - 건설산업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국회도서관 강당

5. 지난 주(5/8~5/14)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요 뉴스레터 List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자	분야	내용
5/8(월)	기업지배구조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 제도 국회 본회의 통과와 그 시사점
5/10(수)	건설/부동산	환매금지형 펀드의 추가 설정 및 사모펀드의 투자자수 산정 등에 관한 자본시장법 관련 법령 개정 해설
5/10(수)	건설/부동산	부정청약 당첨자에 대한 위약금 공제 조항이 설명의무 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첫 대법원 판결 선고
5/11(목)	건설/부동산	서울시 도시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보다 빨라집니다
5/12(금)	기업인수/합병	금융위원회 발표 「기업 M&A 지원방안」(2023. 5. 8. 자) 주요 내용 안내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 백대용 변호사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 박현주 (Hyunju Helen Pak) 외국변호사	T. 02-316-4212 E. hpak@shinkim.com
• 김성범 변호사	T. 02-316-4432 E. sbkim@shinkim.com
• 홍정아 (Claudia Hong) 외국변호사	T. 02-316-4487 E. cahong@shinkim.com
• 안현정 변호사	T. 02-316-1637 E. hjeahn@shinkim.com
• 방세희 변호사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 노지은 변호사	T. 02-316-2573 E. jeroh@shinkim.com
• 성재열 변호사	T. 02-316-1777 E. jysung@shinkim.com
• 조성환 변호사	T. 02-316-2596 E. suhcho@shinkim.com
• 박건백 변호사	T. 02-316-4670 E. gbapark@shinkim.com
• 나인선 변호사	T. 02-316-1795 E. isna@shinkim.com
• 나인경 변호사	T. 02-316-7251 E. ikra@shinkim.com
• 김은혜 변호사	T. 02-316-1736 E. ehkim@shinkim.com
• 서치원 변호사	T. 02-316-7225 E. cwseo@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